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4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2022년 1월 6일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의거, 자치구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자문(안 제4조~제5조)

다. 학교(어린이집)·사회·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안 제6조~제8조)

라.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안 제9조)

마. 환경교육과 관련한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8. 11. ~ 8. 3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12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학교(어린이집),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우리 구를 포함하여 9개 자치구<sup>1)</sup>에 지역환경  
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기 위한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  
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 자치구(9개) ; 영등포, 도봉, 마포, 서초, 종로, 구로, 서대문, 은평, 중구

# 참 고 자 료

##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지역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2. 9. 3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5호로 2022년 9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 확대에 따른 조문 내용 개정(안 제3조)
- 나. 위원회 구성 시 성비율 초과 금지(안 제4조)
- 다. 명확한 임기 규정(안 제5조)
- 라. 해촉 범위 확대(안 제7조)
- 마. 재정지원 조문 신설 및 수당 등 조문 내용 개정  
(안 제13조, 제14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2022. 8. 11. ~ 8. 31.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환경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는 통합 환경정책위원회 근거 마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환경관련 상위법 제·개정 사항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에 관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관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서 성인지관점의 반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범위에 장기 불참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실천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

###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시행 2021. 7. 6.)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2022. 3. 25.)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새로운 환경 이슈에 대해 자치구 단위의 선도적 환경정책 시행 및 늘어나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반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위원회의 심의·자문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 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21. 1. 5., 2021. 6. 15.>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 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